2020. 6. 8.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6월 11일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6. 11.(목) <u>14:00</u>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	고
1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2019헌가8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병합) 위헌제청	,	보건복지부장관 외 2 (정부법무공단)		

붙임: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시건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1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7. 7. 18.과 2019. 2. 27. 각 접수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병합)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 아닐 것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제청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 6. 8.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7헌가22사건의 위헌제청신청인은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야5086). 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2019헌가8사건의 위헌제청신청인은 뇌병변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2017년 경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제청신청인은 2018. 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아10004). 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각하하고, 2019. 2.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__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애인활동법 시행령(2011. 7. 28. 대통령령 제2304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② 법 제5조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활동법(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__ 위헌제청신청인 주장 요지

○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신청인에게 급여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아 온 경우 아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장관 의견 요지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보호의 연속성과 복지·의료 통합에 중점을 둔 급여이고, 장애 인활동지원급여는 사회생활 참여에 중점을 둔 급여로서 급여의 내용에 적합한 수 급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제도이며, 재원도 보험방식과 조세지원방식으로 다르 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있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및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주요 쟁점

○ 심판대상조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 등에 해당하면서 장애인인 제청신 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__ 참고인 의견요지

○ 참고인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기(위헌제청신청인 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주희(이해관계인 측)

○ 참고인 김동기의 의견요지

- 장기요양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면, 별도의 정책대상을 설정하면서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두는 경우(호주, 일본, 프랑스), 장기요양서비스를 기초로 별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스웨덴, 미국),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분 없는 단일 제도를 통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영국, 네덜란드) 등이 있으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당사자의 욕구를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인정심사 시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참고인 황주희의 의견요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비해 늦게 시작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제한을 가진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제한된 것으로, 이는 제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 입법적인 판단이었으며, 당시에는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량의 차이가 없었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내용이 더욱 다양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선호가 예측되었음. 현재의 차별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가 급여량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제도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것임.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데, 현재의 상황에서 급여량 형평성을 위해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급여량 비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장애인 증가 현상, 재원의 한계와 배분의 합리적 기준 수립의 어려움, 대상자 규모의 불명확성, 급여의 하향 평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